

보라매공원 북동산 녹지조 공사  
폐 기 물 처 리 용 역

# 설 계 예 산 서

2009. 06.

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

- 목 차 -

1. 설 계 설 명 서
2. 시 방 서
3. 원 가 계 산 서
4. 예 산 내 역 서
5. 수 량 산 출 서
6. 경 비 단 가

# 1. 설 계 설 명 서

## 2. 시 방 서

### 3. 원 가 계 산 서

## 4. 예 산 내 역 서

## 5. 수 량 산 출 서

## 6. 경 비 단 가

#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

## 1. 목 적

◦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,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◦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.

-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.
-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.
-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.
-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.
-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.

◦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.

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,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

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.

## 2. 용 어

◦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「폐기물」이란 쓰레기, 연소재, 폐유, 폐산,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,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.
- ② 「생활폐기물」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.
- ③ 「사업장폐기물」은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,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,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- ④ 「지정폐기물」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,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- ⑤ 「건설폐기물」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(해체, 신축, 증축, 개축, 재건축, 재개발, 도로신설, 굴착, 개보수, 상수도 관로공사 등)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말한다.
- ⑥ 「혼합폐기물」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, 폐블록,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·외 수장재가 제거된 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, 폐아스콘,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, 폐플라스

틱류, 금속류, 유리조각, 섬유조각, 폐목재, 폐합성수지류, 종이,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.

⑦ 「발주자」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.

⑧ 「처리」는 폐기물의 소각, 중화, 파쇄,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,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.

⑨ 「재생골재」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, 이 물질 함유량 1%이하를 말한다.

⑩ 「폐기물처리시설」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### 3. 적용범위

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, 건설사업자(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)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### 4.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

◦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.

-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,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,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.
- ③ 처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,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.

## 5.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

-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.
-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(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,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)
-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→ 건설사업자(공사의 원도급업자) → 처리사업자(수집운반 등)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,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6.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

-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.(단,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)
-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## 7. 건설폐기물의 재활용

◦배출사업자(건설사업자)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,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.

-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,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, 수집, 운반,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.

◦발주자 및 원도급업자(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)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◦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.

-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.
  - ‘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,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.
-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.
-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, 소각, 분쇄,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.
  -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, 재생골재,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.
  -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.
  -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
-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.
- ⑥ 처리사업자(중간처리업)는 배출사업자(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) 및 수집운반사업자,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.
-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,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

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(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)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.

## 8. 대 집 행(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)

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(재활용)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.

◦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

◦폐기물을 위탁한 경우,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

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